

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			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	
	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				
개발·이용시설 설치 내용	위치					
	굴착 깊이	m	굴착 지름	mm	취수계획량	m³/일
양수설비 내용	동력장치	HP	토출관 안쪽 지름	mm		
	설치 깊이	m	양수능력	m³/일		
개발·이용기간		개발·이용 용도				
오염방지시설 내용						
원상복구 예외인정 사유						

「지하수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: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 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.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: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